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60

제출일자 : 2026. 8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달성군 통합방위업무 관련 기관과 소관 부서의 변경된 명칭 및 업무 내용을 수정하고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위원 구성 개정(안 제3조제3항)

- 달성군 통합방위 업무와 연관성이 다소 낮은 KT&G달성지점장, 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,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, KT의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폐지된 KT 달성지점장도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의 직위 변경 요청 반영

나. 분야별 간사 개정(안 제5조)

- 작전담당간사를 직제 변동에 유연하게 달성군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로 수정
- 총무·민방위담당간사를 '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로 나누고 각 업무의 소관 부서장으로 변경
- '24. 1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방위협의회 간사에 소방담당간사로 '달성소방서' 추가

다.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개정(안 제7조)

- 실무위원회 의장을 부군수로 지정
-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로 수정

라. 회의 개정(안 제8조)

-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에 따라 회의방식에 화상회의와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6. 7. 20. ~ 8. 1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안전총괄과 협의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4호 중 “관계자”를 “통합방위 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작전담당간사 :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
2. 예비군담당간사 : 달성군 기동대장
3. 경찰담당간사 : 달성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부서장
4. 총무담당간사 : 통합방위 업무 부서장
5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 업무 부서장
6. 소방담당간사 : 달성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부서장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, 그”를 “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”로, “거쳐 의장이”를 “거쳐 실무위원회 의장이”로 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

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4. 국가정보원 관계자 5. ~ 15. (생 략) 16. KT 달성지점장 17. KT&G달성지점장 18.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 19. 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달성고령지사장 20. (생 략)	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 통합방위 담당관 5. ~ 15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20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간사 등)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1. 작전담당간사 : 달성대대 작전과장 2. 예비군담당간사 : 달성군 기동대장 3. 경찰담당간사 :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. 총무·민방위담당간사 : 군 총무과장	제5조(간사 등)----------. 1. 작전담당간사 :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 2. 예비군담당간사 : 달성군 기동대장 3. 경찰담당간사 : 달성경찰서 통합방위 업무 부서장 4. 총무담당간사 : 통합방위 업무 부서장 5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 업무 부서장 6. 소방담당간사 : 달성소방서 통합방위 업무 부서장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등) ① (생 략) <신 설>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. 제8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.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의장이 정한다. 제8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통합방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통합방위”란 적의 침투·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국가방위요소”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(防衛戰力)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.

가.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국군

나. 경찰청·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경찰기구

다.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**소방대 <개정 2024. 1. 16.>**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② 시·군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□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**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**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 12. 24.>

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“지역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12. 24.>

1.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⑤ **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